

## 과업이행요청서

# 과업이행요청서

사업명	2024년 인터넷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주관기관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2023. 11.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홍보담당관실	백종복	053-803-5052	053-220-5052



대구광역시의회  
[홍보담당관실]

1. 과업명 : 2024년 인터넷방송시스템 유지보수

2. 과업의 목적

대구광역시의회가 인터넷방송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전점검, 장애복구 등 유지보수 활동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유지보수 대상

인터넷방송시스템의 각종 장비 및 관련 프로그램 등 일체(이하 “시스템”이라 한다)를 말하며 세부내역은 <붙임 1>과 같다.

4. 유지보수 기간 및 유지보수료

가. 유지보수 기간 : 2024. 1. 1.(또는 착수일) ~ 2024. 12. 31.

※ 2024년 본회의실 의정방송시스템 교체 사업에 따른 유지보수 변경계약이 있음. 이에 유지보수비 및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 금액 변경 예정임.

나. 과업수행자는 유지보수내역을 기재한 확인서 및 산출물을 매월 말일 전에 제출하고 유지보수비는 분기(3개월)별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한다.

다. 대구광역시의회는 과업수행자에게서 대금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유지보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5.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다.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지방의회에서 발주한 **인터넷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실적과 회의운영 통합제어 솔루션 유지보수 사업실적**을 보유한 업체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6. 제출서류

- 가. 입찰 전 제출서류
  - (1) 실적증명서
- 나. 계약 시 제출서류
  - (1) 유지보수 대상물품의 제조사 또는 공급사에서 발급한 기술지원 협약서
- 다.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서류
  - (1) 착수계
  - (2)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유지보수요원) 각 1부
  - (3) 보안협약서(대표자 명의) 1부
  - (4)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 교육지원 계획
  - (5) 비밀유지계약서

## 7. 유지보수 방법 및 내용

- 가. 과업수행자는 시스템을 양호한 상태로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조정 및 수리를 행하여야 한다.
- 나. 유지보수는 방문처리를 기본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대구광역시 의회의 요구 시 통신 등 기타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 다. 과업수행자는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붙임2>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라. 대구광역시의회가 시스템 운영 중 장비나 프로그램 오류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대구광역시의회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4시간 이내에 도착, 8시간 이내에 시스템의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만약 시간 내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는 임시가동 조치하고 그 사유 및 정상 복구계획을 대구광역시의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마. 과업수행자는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대체부품 및 소모품 일체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제거된 부품은 과업수행자의 소유로 한다.
- 바. 과업수행자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제반부품을 항상 확보하여 유지보수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장시간 장애발생 시 대구광역시의회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대체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 관련 법규의 개정 또는 신설 등 시스템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할 시 대구광역시의회가 과업수행자에 통보하고, 과업수행자는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아. 과업수행자는 시스템의 버전 업그레이드에 대한 정보 및 패치 작업 등을 무상으로 제공(실시)하여야 하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자. 설치장소 및 시스템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쌍방의

협의를 따라 무상으로 변경 작업에 응하여야 한다.

## 8. 보안사항

- 가. 유지보수업체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대구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 및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며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유지보수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를 위반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 다. 유지보수업체 보안관리 책임자는 대구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 등에 따라 자체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유지보수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라. 유지보수업체 및 관련 직원은 업무 수행상 취득한 비밀을 업무 수행 중뿐만 아니라 계약만료 또는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유지보수 완료 후 유지보수 기간 중 발생한 자료는 전량 반납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하며, 본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바. 용역업체는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사. 계약당사자는 본 사업수행 중 사업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보안사항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대구광역시의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 9. 계약의 변경 및 계약 불이행

- 가. 계약서의 내용 중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합의하에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 계약이행이나 유지보수료 청구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대구광역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10.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대구광역시의회와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제반 권리 및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11. 계약의 해지

-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대구광역시의회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보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 과업수행자의 업무추진 상황으로 보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유지보수대상의 미사용 및 기타 유지보수 해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 나.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대구광역시의회는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용역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12. 해석 및 분쟁해결

본 계약서의 해석에 대해 대구광역시의회와 과업수행자 간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 관할법원은 대구광역시의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13. 준용규정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를 준용한다.

### 【붙임1】

## 유지보수대상 세부내역

구분	품명	모델 및 규격	제조사	수량	비고
본회의장	HD카메라	AW_HE120WE	Panasonic	2	
	서브카메라	AW_HE60S	"	1	
	수화용카메라	AW_HE40S	"	1	
	카메라 컨트롤러	AW_RP50	"	1	
	HD중계시스템	TRICASTER 460(CS 포함)	NewTek	1	기술지원협약대상
	HD인코더/모듈레이터	HEN-30B	루먼텍	1	"
	전원공급장치	SMP-1215, 220V/110A	동성씨엔티	1	
	스위칭허브	JGS524-200	Netgear	1	
상임위 (6개) 및 소회의실	HD카메라	AW_HE60S	Panasonic	16	
	HD카메라	AW_HE40S	"	4	
	HD카메라	MGH-N20	티노	8	
	디지털 회의마이크	TN-DL3000	"	43	기술지원협약대상
	디지털 회의마이크	Confidea T-DD	Televic	16	"
	디지털 회의마이크	HSM-380C	한양전자산업	1	"
	디지털 회의마이크	HSM-380D	"	15	
	구즈넥 마이크로폰	HVM-3800	"	16	
	디지털 회의마이크 컨트롤러	TN-DCCU3000	티노	5	"
	디지털 회의마이크 컨트롤러	Plixus multimedia engine	Televic	1	"
	디지털 회의마이크 컨트롤러	HMC-280	한양전자산업	1	"
	통합제어솔루션	XCaster Live Cut pro V7.0	NewTek	5	"
	HD 영상중계솔루션	MGH-Nswitcher Ent	티노	1	"
	HD인코더/모듈레이터	ENCTRI-TN7	"	5	"
	HD 모듈레이터	HEN-30B	루먼텍	1	"
	인코더(송출체인)	OSBE-1000	오픈스택	1	"
	컨버터	BAT-SH, HD	루만텍	5	
	네트워크 스위치	CN/WS-C2960L	Cisco	5	
	네트워크 스위치	CN/GS728TPv2	Netgear	2	
	전원공급장치	PP-8S, 9채널	임산업	1	
전원공급장치	VIP-PD206SA	VASCOM	1		
전원공급장치	SMP-1215, 220V/100A	동성씨엔티	4		
방송서버	미디어서버	Cloud MEDIA SERVER	스트림비전	1	기술지원협약대상
	송출체인	SV-CloudMedia Chain v6.0 Pro	"	3	"
	스트리밍 서버	CN/ProLiant DL380 Gen9	HP	1	"
	네트워크 스위치	CN/SG220-26	Cisco	1	

【붙임2】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일지

	담당자	팀 장	담당관
결 재		전 결	

2024. . . .

정기점검·고장(장애)수리 내역			
점검/장애 사    항	점검내용 상세기록		
수리내역 및 조치사항			
기타의견			
상기 내용과 상위 없음을 대구광역시의회, 유지보수업체 상호 확인함.			
점    검    자 (과업수행 자)	소속 : 직    책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확    인    자 (대구광역시 의회)	소    속 :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직    책 : 주무관 성    명 :           (인 또는 서명)

【별첨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 [별표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대구광역시에 납부한다.
-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대구광역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④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참여 제한</li> <li>○ 위규용역책임자 교체</li> <li>○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li> <li>○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li> </ul>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규직속감독자 교체</li> <li>○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li> <li>○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li> </ul>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 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교체  ○ 위규자·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정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10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40만원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분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기타 일반적으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등

[별표4]

###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   )요일

순번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CD-RW·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 여부	



[별표5]

## 보안서약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와 인터넷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과 아래 “정보누출금지대상”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또한, 본인은 최근 1개월내 경찰청(또는 경찰서)의 범죄경력 열람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약한다

### ※ 정보누출금지대상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년 월 일

서약자  
(참여업체)

업체명 :  
직책 :  
성명 :  
연락처 :

(서명)

[별표6]

##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_\_\_\_\_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을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 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장 귀하

[별표7]

# 비밀유지계약서

용역수행 업체(이하 “계약상대자”)와 대구광역시의회(이하 “발주기관”)은 관련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 (계약의 목적)

- 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과 계약한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비밀의 내용)

-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계약상대자가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분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4조 (계약기간)

- 본 계약은 2024년 월 일부터 2024년 월 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제5조 (정보취급자)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정보 취급자 현황과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 (자료의 반환)

-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완료 후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와 회사대표자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타 규정이나 지침, 법률 등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수정 규정을 작성하여 적용하고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1조 (계약의 수정)

-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4]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③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되지 않으며 타 항목과 별도로 부과되며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한다.

**제13조 (지적재산권)**

-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적소유권의 침해임을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이하 “소송” 등이라 한다)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소송 등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며,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송 등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자**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동인동1가)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장                      (인)

**계약상대자**

○○시 ○○구 ○○로 ○○○ (○○동)  
대표이사    (인)